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(정의)·제619조의2(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) 기준 | 홀세일 인더스트리 x (주)팀에스 | 서식 2026-09

1. 작업 정보 (작업 전 확인 — 규칙 제619조 제2항)			
사업장 / 부서		밀폐공간 위치·명칭	
작업 일시·기간		작업 내용	
관리감독자		감시인	
작업 근로자(성명)		측정자(지정자, 제619조의2 ①)	
측정 장비(모델·일련번호)		장비 교정일 / 이상 유무 확인	

[illegible]

밀폐공간의 위험성	☐ 숙지 확인	확인자 서명:
측정장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조작 방법	☐ 숙지 확인	확인자 서명:
밀폐공간 내에서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	☐ 숙지 확인	확인자 서명:
적정공기의 기준과 평가 방법	☐ 숙지 확인	확인자 서명:

- 적정공기(규칙 제618조 제3호): 산소농도 18퍼센트 이상 23.5퍼센트 미만, 이산화탄소 1.5퍼센트 미만, 일산화탄소 30피피엠 미만, 황화수소 10피피엠 미만인 수증의 공기. 산소결핍 = 산소농도 18퍼센트 미만(제4호).
- 측정용 작업을 시작하기 전(일시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경우 포함)에 대기과실무경험이 있는 지정자가 실시하는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평가한다(제619조의2 ①). 무선센서-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도 포함됩니다.
-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거나 평가된 작업장을 환기하거나 공기조화기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(제619조의2 ②). 가연성 가스 %LEL 등은 적정공기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내 기준을 별도로 정해 '가연 측정'란에 기재하십시오.
- 본 서식은 법령 준수를 요약한 기구 양식이며 법적 판권을 대하지 않습니다. 원문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산업안전보건관) 안전보건관리과 기획, 시행 2025-09-01. 문의 sales@wholesale-k.com / www.wholesale-k.com

